



경상북도교육청 –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

2020년도 단체협약요구(안)

0000. . .



경상북도교육청
Gyeongsangbuk-do Office of Education



경상북도교육청
공무원노동조합

경상북도교육청-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2020년도 단체협약요구(안)

전 문

경상북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과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(이하 “조합”이라 한다)은 헌법과 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등 관계법령이 정한 근본 취지에 입각하여 조합원의 노동조건을 유지·개선함으로써 복리를 증진하고 경제·사회적 지위 향상을 기함과 동시에 바람직한 공무원 노동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본 단체협약(이하 “협약”이라 한다)을 체결하며, 상호 성실과 신의를 바탕으로 이 협약을 준수 한다.

제1장 총 칙

제1조【적용범위】 이 협약은 교육감과 조합 및 조합원에 적용한다.

제2조【성실의 의무】 교육감과 조합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본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존중한다.

제3조【자치법규의 제·개정】 교육감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사회·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조례·규칙 및 훈령(행정지침 포함)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과 사전 합의 하여야 한다.

제4조【협약의 우선 및 조합 활동 권리 저하의 금지】 본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에게 유리하게 적용한다.

제2장 조합 활동

제5조【노동조합 활동 보장】 ① 교육감은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, 정당한 조합 운영에 대하여 방해 또는 개입하지 아니하며,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.

② 조합 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

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근무시간 중에도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.

1. 조합원 총회
2. 정기·임시 대의원대회, 상집위원, 상임위원 회의
3. 노사협의회, 단체교섭 및 상급단체 회의 참석
4. 기타 교육감과 조합간 합의한 사항

③교육감은 공무원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연수 시 신규직원 연수(2시간 이상) 및 전문교육 개설(가급적)시 공무원노동관계 관련 교과목이 편성·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다.

④교육감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·군 지역별로 학교의 동·하계휴가 중 각 2시간의 조합원 연수시간을 부여한다.

⑤교육감은 조합 및 지부의 중요간부(선출직)에 대한 인사발령 시 노조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합의하여 인사한다.

제6조【부당노동행위금지】 교육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는다.

제7조【시설편의 제공】 ①교육감은 조합의 요구가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다.

②교육감은 조합 활동에 필요한 집기, 사무기기 등 비품을 요구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.

③교육감은 조합이 각종 회의 또는 교육을 위하여 장소, 통신 및 방송망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기관의 관리·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반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.

④교육감은 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및 학교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요청할 경우 당해 기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 협조하도록 지도한다.

제8조【조합의 교육행정관련 행사 지원】 교육감은 경북교육 발전과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육행정 관련연구 행사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9조【통지의 협조】 교육감과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
이를 상호 통지 하도록 협조한다.

① 교육감이 조합에 통지할 사항

1. 공무원단체관련 각종 자치법규의 제정과 개폐(홈페이지 게재로 대체가능)
2. 지방공무원의 정기 인사발령 사항
3. 교육청 및 산하기관 기구표
4. 교육통계연보 및 교육수첩
5. 각급 학교로 발송하는 공무원단체 관련 공문

② 조합이 교육감에 통지할 사항

1. 규약·규정의 변경사항
2. 조합기구표 및 조합 임원 명단
3. 노동조합이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

제10조【문서열람, 복사 및 자료제공】 ① 교육감은 조합원에 관한 사항 및 조합 활동에 필요한 문서·자료·정보에 대하여 문서로 정보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(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)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공한다.

② 교육감은 노동조합이 조합활동과 관련한 문서를 교육청에 발송한 경우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처리하되 내용이 소속기관에 통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문서로 통보한다.

제11조【홍보활동보장】 ① 교육감은 조합이 각급 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하여 조합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 한다.

② 공무원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연수 및 신규공무원 임용연수 시 노동조합에서 요청 할 경우 1시간 이내의 노조 홍보 활동을 위한 시간을 부여 할 수 있다.

제12조【설문조사 협조】 교육감은 노동조합이 근무여건 개선 및 경북 교육발전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육청 홈페이지 등의 이용에 최대한 협조한다.

제13조【근로조건 복지 관련 위원회의 참여】 교육감은 위원회 안건 중 조합원의 근로조건, 권익, 복지, 보수(성과상여금) 등과 관련된 안건은

노동조합에 통보하고, 노동조합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제14조【주요 행사의 참석】 교육감은 교육청이 주관하는 연수, 워크숍, 각종 행사 중 노동조합의 참석이 필요한 경우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한다.

제3장 인사 및 조직

제15조【인사원칙】 ① 교육감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·운영하여 지방공무원의 전보, 승진, 포상, 징계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객관성, 공정성,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한다.

② 교육감은 인사원칙 및 제도를 수립, 변경하고자 할 때나, 매년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시에 지방공무원 및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.

③ 교육감은 노동조합이 각종 인사 및 인사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, 교육감은 의견에 대하여 검토 후 그 결과를 노동조합에 통보한다.

④ 교육감은 인사제도의 운영 및 인사 관리를 함에 있어 성별, 임신, 출산휴가, 육아휴직,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.

⑤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 소통창구 활성화를 통한 의견제출 기회 확대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협의체 정례회를 연 2회 개최한다.

⑥ 교육감은 근무평정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한다.

⑦ 교육감은 정기 인사 시 지방공무원의 인사 고충과 민원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⑧ 교육감은 정기인사(1월, 7월) 시 10일 전 인사발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⑨ 교육감은 정기인사 시 승진과 전보에 관한 인사개요를 예고하도록 한다.

⑩ 교육감은 승진 등을 장기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자료(퇴직예정자 현황 등)를 공개한다.

⑪ 교육감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.

제16조【인사제도 개선】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인사운영과 관련한 설명

회 등을 실시하여, 인사행정에 대한 불만 및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②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범위 내에서 일반승진 요인 발생 시 조속히 일반승진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.

③ 교육감은 조합에서 사무관(5급) 승진제도 개선을 요구하면 노동조합과 사전 의견 수렴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조합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무관 승진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.

④ 교육감은 법령에 명시한 근속승진 제도를 준수한다.

⑤ 교육감은 임용(징계, 질병 등 제외)에 따른 인사발령 사항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.

⑥ 교육감은 기관별 정·현원 및 임용 등과 관련된 인사통계자료를 필요시 노동조합에 제공한다.

⑦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필수실무요원 선발인원 및 기준을 직렬별 특성에 맞게 조정한다.

제17조 【공정한 전보제도 개선】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전보 시 공개된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 및 보직관리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.

② 교육감은 「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」 개정 시 합리적인 인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,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.

③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전보제도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필요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.

④ 교육감은 각급 기관(학교) 통폐합 및 정원조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전보하고자 할 경우 공무원의 희망지를 고려하여 전보한다.

⑤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기관장 전보 요청 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다.

⑥ 교육감은 본청(직속기관) 전입 공모 시 선발 절차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실시하고, 선발 인원, 대상 및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한다.

⑦ 교육감은 전보 시 공정한 순환 근무가 될 수 있도록 학교, 직속기관, 지역교육지원청 간 실질적인 인사교류를 활성화 하도록 노력한다.

⑧교육감은 정기인사 전에 지방공무원 기관(부서) 만기예정자 자료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한다.

⑨교육감은 전보 유예자에 대한 명단 및 사유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한다.

⑩교육감은 조리직렬 지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3식 학교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승진 가점 및 전보가점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하며, 순환 배치 할 수 있도록 한다.

제18조 【모범공무원 등 표창제도의 합리적 개선】 ①교육감은 표창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수상자의 재직기관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 안배를 기하고, 공정한 심사를 통해 포상 대상자가 선발 될 수 있도록 한다.

제19조 【인사위원회 등 조합원 참여】 ① 교육감은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인사위원회 구성 및 인사기준을 수립한다.

1. 교육감은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구성 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1명을 위촉한다.

2. 교육감은 인사기준 수립 시에는 사전에 노동조합 의견을 수렴하여 인사기준을 수립하도록 한다.

제20조 【조직·인력의 적정배분 및 유지】 ① 교육감은 근로강도 강화, 근무환경 변화 등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관련되는 조직 개편 시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한 객관적인 조직 진단을 실시한다.

②교육감은 조직개편, 직종(직군,직렬,전직)개편 등과 관련하여 본청 및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일방적으로 조정하지 아니하며, 부득이 조정이 필요할 시 상호 합의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한다.

③교육감은 각급 학교 정원 책정기준 수립 시 업무량과 기능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책정하며 각급 학교 및 노동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노력한다.

④교육감은 공무원의 퇴직 등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직렬별로 신속히 충원하여 정원에 비해 현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인력을 충원한다.

⑤교육감은 5급 학교행정실장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행정실장 직급을 6급으로 상향 조정되도록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상향되도록 한다.

⑥교육감은 총액인건비제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교육전문직원, 교육공

무직원 인건비 등이 당초 확정된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총액인건비제 예산에서 전용되지 않도록 한다.

⑦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 지방공무원을 채용하여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집행잔액을 최소하도록 한다.

⑧ 교육감은 관할 전체 조직의 업무 진단을 통해 조직·인력을 적정 배분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 조직진단(외부용역실시)예산을 편성한다.

⑨ 교육감은 소수직렬 상위직급의 정원 책정을 「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」에 의거 다른 직렬의 상위직급 비율과 타시도 비율 형평성에 맞추도록 한다.

⑩ 교육감은 각급 학교 행정실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연차적으로 행정실을 확대 개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⑪ 교육감은 새로운 회계시스템 도입 등 갈수록 증가하는 학교 행정업무를 감안하여 지방공무원을 중원되도록 노력한다.

⑫ 교육감은 학교 행정실 근무 지방공무원 결원 발생 시 책임감과 전문성 있는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⑬ 교육감은 지역교육청에 일반직 과장급 보직이 2개 이상인 지역은 선임 과장직급 및 선임 담당직급을 상향 조정하도록 노력한다.

⑭ 교육감은 노동조건개선 및 근무환경 악화 등으로 인한 정원확대를 노동 조합에서 요구하면 반영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.

제21조 【일반직 공무원 처우 개선】 ① 교육감은 법령에서 정한 일반직의 상위직급 정원 비율이 타시도 비율 형평성에 맞추어 연차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.

② 교육감은 소규모학교 1인 행정실장의 근무여건 및 인력확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해소되도록 한다.

③ 교육감은 공립 유치원 행정전담 인력이 연차적으로 배치되도록 한다.

④ 교육감은 지역교육청에 학교 교육공무직 급여 및 인사기록 이관을 위해 지방 공무원을 충원하여 행정실 직원의 업무경감이 되도록 정원을 확보한다.

⑤ 교육감은 중요직무급 수당 신설에 따라 선정 대상 범위가 확대 되도록 한다.

제22조 【도서관 사서직 인력 확보】 ① 교육감은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직 공무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도서관법에 따라 부족한 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하도록 한다.

② 교육감은 도서관 주말·공휴일 도서관 근무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도서관 근무자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.

③ 교육감은 공공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무운영직렬의 정원을 일반직 전환할 시 사서직 정원으로 충원되도록 한다.

제23조 【시설직(기술직) 인력 충원】 ① 교육감은 시설(기술)직 경력경쟁 시험을 통해 지역교육청 시설(기술)직 인력을 충원하여 근로여건을 개선한다.

② 교육감은 특성화·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 임용인원 선발 비율(50%이상)을 타시도의 비율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임용인원 선발 비율을 낮추어 채용하도록 한다.

제24조 【보건직 인력 충원】 교육감은 지역교육청에 학교급식 점검, 유해 업소 점검 등 보건업무의 증가에 따른 보건직공무원의 충원 노력을 통해 보건직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한다.

제25조 【임기제 공무원】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의 효율성,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자의 임용이 꼭 필요한 업무인지 면밀히 검토한 후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최소한도로 임기제 공무원(개방형 직위 포함)을 채용한다.

② 교육감은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계획 수립, 계약기간 연장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제4장 지방공무원 처우 개선

제26조 【시설관리직 및 운전직렬 처우 개선】

① 교육감은 학교통학차량 운전원의 조기 출근에 따른 시간외 근무 시 특근매식비를 지급한다.

② 교육감은 시설관리직 및 운전직렬 퇴직에 따른 미채용으로 인한 결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현장의 결원을 해소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.

③ 교육감은 운전직렬 중 공동조리교로 급식 운반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수당이 지급 될 수 있도록 한다.

④ 교육감은 시설관리직의 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유지비(환경정비를 위한 수목정리 및 잡초제거, 위험요인이 발생하는 업무 등의 외부용역비)가 편성되어 집행한다.

⑤ 교육감은 시설관리직렬 지방공무원 등 현장에서 시설물을 관리·담당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시설관리 전문교육(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) 및 민간외부위탁교육기관과 협의하여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력한다.

⑥ 교육감은 각급 학교업무분장 시 소속직원과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용어(기타, 지시 등)는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각급 학교 업무분장 시 반영 될 수 있도록 한다.

⑦ 교육감은 시설관리직렬의 근무여건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.

⑧ 교육감은 학교 시설물에 대하여 실질적인 안전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학교시설물을 관리한다.

제27조【공무원 연수제도 개선】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연수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.

②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방공무원 6급 이하 대상으로 장기교육훈련(6개월)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되도록 한다.

③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공로연수대상자 선정 시 6-7급 희망자는 공로연수 기간과 대상자 선정 범위가 동일하도록 한다.

제28조【국외연수 확대 등】 ① 교육감은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국외연수 기회 확대 및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한다.

② 교육감은 노·사가 함께하는 노동문화 교육 및 체험을 위한 연수기회를 마련하도록 한다.

제29조【호칭 개선】 교육감과 조합은 소속 공무원 간 상호 존중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보직이 없는 지방공무원의 호칭을 「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」(인사혁신처 예규)에 따라 ‘주무관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도한다.

제5장 단체교섭

제30조 【합의서 작성】 ① 교육감은 단체교섭에 합의된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교육감과 조합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다.

② 교육감은 교섭체결 후 1월 이내에 제1항의 문서를 소속기관에 문서로 발송하여야 한다.

제31조 【단체협약 이행】 ① 교육감은 단체협약 이행 결과를 반기별로 조합에 통보한다.

제32조 【교원노조와 단체교섭 시 지방공무원 관련 사항 사전 협의】 ① 교육감은 교원노조와 단체교섭 시 각급학교 행정실 등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과 사전 협의한다.

② 교육감은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 시 지방공무원의 업무가 증가되지 않도록 한다.

③ 교육감은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이유로 기존의 업무가 아닌 새로운 업무가 정원 확보 등 제도적 보완 없이 지방공무원의 업무로 이관되지 않도록 한다.

제33조 【보충협약 기타】 교육감과 조합 쌍방은 이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보충협약 체결 및 재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. 다만, 경제적·사회적 여건의 변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협약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제6장 근로조건

제34조 【대체인력 지원】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출산 휴가 및 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에 필요한 인건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.

②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시 육아휴직 예상 인력을 충분히 반영하여 임용인원을 선발하고 결원 시 지방공무원을 즉시 발령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.

② 교육감은 일반직공무원 정원대비 결원, 병가, 출산휴가, 휴직 등으로 인

하여 업무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 및 업무대행제도를 개선하여 교육현장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여야한다.

제35조【행정실 등 사무실 환경 근무여건 개선】 ①교육감은 환경 개선에 따른 예산 요구가 있을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.

②교육감은 행정실이 미설치된 학교에 대하여 학교자체 설정을 고려·설치하도록 한다.

③교육감은 각급 학교 행정실과 교무실이 통합 운영되지 않도록 하며,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공무원의 쾌적하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조성을 위해 행정실을 별도의 공간에 최소 교실 한 칸(66m^2)이상의 적정한 면적을 확보하도록 한다.

제36조【업무대행】 ①교육감은 운전원의 토요방과 후 수업 실시에 따른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휴무 등 그에 상응하는 대가(시간외수당)가 주어지도록 하여야 하며, 운전원이 연가 등 부재중일 경우를 대비한 업무 대행문제 해결 방안(예비기사 확보, 대체인력 인건비 확보노력 등)을 마련하도록 한다.

②교육감은 조리사의 연가 등 부재로 인한 대체인력 지원비를 학교회계예산에서 편성하도록 한다.

③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한 조리직렬 지방공무원에 대해 본인 희망에 따라 영양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.

제37조【당직실 근무환경 등】 ①교육감은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당직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.

②교육감은 당직수당을 자치단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③교육감은 당직(일·숙직)을 할 경우 다음 날 종일휴무가 실시되도록 노력한다.

④교육감은 당직(일·숙직)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및 불가피하게 휴무를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5일이내에 휴무를 부여 할 수 있도록 한다.

제38조【공무원 피복】 교육감은 학교 설정에 따라 아래 직원에 대하여 교

단지원에 필요한 피복비 및 안전용품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.

1. 시설관리직: 작업복 및 안전화
2. 조리사: 위생복 및 위생안전 장화
3. 운전직: 운전복 및 안전화

제39조 【노사협의회 개최】 ① 교육감은 노사협의회와 관련하여 반기별(6월, 12월)로 개최하며, 협의 안건은 개최 10일전에 통보한다.

② 교육감은 노사협의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노사협의회 대표자를 교육감으로 하고, 행정국장 및 관련 업무부서장이 참석한다.

제40조 【근무환경 개선】 ① 교육감은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가급적 직원 휴게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고, 기존 교원 휴게실을 직원 휴게실로 활용토록 한다.

② 교육감은 조리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급식실 현대화 사업 시 급식실에 종사하는 조리사 휴게실을 남, 여 별도 확보하여 제공하도록 한다.

④ 교육감은 교직원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확충한다.

⑤ 교육감은 천재지변이나 전염성 질병으로 인해 휴업 또는 온라인수업을 운영 할 경우 초등학교 이하 재학하는 자녀를 둔 지방공무원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.

제41조 【직원 동원 최소화 및 수당인상】 ① 교육감은 교육청과 관련이 없는 외부행사(시험감독 등)에 지방공무원의 동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며 참석에 따른 수당을 인상하여 지급한다.

② 교육감은 학기초 연수 및 각종행사 개최를 최소화 하며 지방공무원의 참석을 강요 하지 않는다.

제42조 【학교 시설공사 지원 업무개선】 ① 교육감은 지역교육청에 학교시설 공사 업무 지원을 위한 서포터즈제를 활성화하여 각급 학교의 시설관리가 전문적,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.

② 교육감은 학교의 2,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전담을 위하여 지역교육청에 시설직(기술)공무원의 연차적 충원·배치 노력을 함으로써 행정실 업무경감

및 근무여건을 개선한다.

- ③교육감은 학교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5천만 원 이상 학교시설공사는 학교시설공사 집행대행 계획에 따라 학교시설공사를 집행한다.
- ④교육감은 학교시설공사 예산 편성 시 학교회계전출금(예산과목 620)으로 편성을 금지한다.

제7장 조합원복지예산

제43조【조합원 근로조건 및 복지예산 편성 원칙】 교육감은 협약 내용 중 지방공무원의 근무조건·후생복지 및 경제적·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예산은 관계법령 및 예산 편성지침 등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.

- 제44조【맞춤형 복지비 인상】** ①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맞춤형 복지비가 타 시·도교육청 및 지자체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되도록 한다.
- ②교육감은 맞춤형복지비 중 특별건강 검진비는 나이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지원되도록 한다.

제45조【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예산 지원】 ①교육감은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등록된 직장동호인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.

- ②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지원을 위해 자율연수경비를 지원한다.

제46조【휴양시설 이용료 지원】 교육감은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공무원 휴양시설 이용료(연 30만원)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.

제8장 공무원 권리보장

제47조【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】 ①교육감은 가정친화적 제도 운영 확대를 위해 출산휴가, 육아시간, 모성보호휴가 등 관련 특별휴가가 활성화 되도록 안내하고 관련 특별휴가 사용으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.

- ②교육감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한 과다한 업무지시를 자제하도록 노력한다.

③ 교육감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당직(일직) 근무에서 제외하도록 하되, 당직근무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본인 동의를 얻어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.

④ 교육감은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에게 노·사합동으로 출산용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제48조【직장보육시설】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영,유아 보육시설 설치에 적극 노력한다.

제49조【직장 내 성범죄 및 괴롭힘(갑질)예방】 ① 교육감은 성폭력(성희롱) 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이 언어폭력, 성폭력 등 인권 침해를 입은 경우에는 정신, 심리적 충격으로부터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교내, 외 전문상담기관이나 병원과 연계하여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③ 교육감은 공무원행동 강령에서 규정한 직무권한 등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폭언, 폭력, 명예훼손, 부당지시 등 업무 공정성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적극 대응하여 지방공무원의 직장내 괴롭힘(갑질)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교육감은 사실관계 확인결과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로 밝혀질 경우 전보조치, 징계위원회 회부(중징계)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하여야 한다.

제50조【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】 교육감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.

제51조【직무관련 소송지원 등】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비용을 적극 지원을 한다.

제52조【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및 교육감과 대화의날 운영】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마음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한다.

②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의견수렴과 소통을 위해 교육감과 대화의날

을 연 1회 이상 개최하여 운영 한다.

제9장 행정 제도 개선

제53 【행정실 업무 개선 방안】 ① 교육감은 교원업무경감 실시로 교원업무가 지방공무원의 업무로 전가되지 않도록 한다.

② 교육감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1호 나 규정에 의거 환경위생관리업무(먹는 물 관리, 공기 질 관리, 석면 관리 등)는 보건교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학교에 공문으로 시행하여 행정실과의 갈등을 해소한다.

③ 교육감은 방과후, 돌봄강사 계약 및 회계 관련 업무를 행정실로 이관되지 않도록 한다.

④ 교육감은 정보화 물품의 구입·유지·폐기, 학교유무선망 및 CCTV 관리와 같은 시설관리, 재난대응 대피훈련 등 안전관리 등의 행정 업무를 행정실로 이관되지 않도록 한다.

⑤ 교육감은 교복 학교주관 구매, 저소득층 지원을 포함한 교육급여 관련 업무를 행정실로 이관되지 않도록 한다.

⑥ 교육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학교의 관리감독자 지정 시 감독적 지위에 있는 학교장으로 선임하여야 한다.

제54조 【방화관리자 업무 등】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적 지위에 있는 학교장으로 선임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1인 행정실장 배치 학교에 대해서 건축물·공작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 관리업자에게 방화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다.

제55조 【감사방법개선】 ① 교육감은 학교에 대한 감사·지도점검 등을 가급적이면 학년초에는 시행하지 않도록 노력한다.

② 교육감은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양한 학교 및 행정기관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정기종합감사를 면제한다.

제56조 【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】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복잡한 업무 절차가 간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.

제57조 【조리종사원 인력배치 기준 변경 등】 교육감은 원활한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조리종사원 배치기준을 적정히 운영하고 위생 점검 시 현실에

맞는 지도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한다.

제10장 교육부 등 관련기관 개선 요구 사항

제1조【행정실 법제화】 교육감은 학교 행정실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.

제2조【학비 보조수당 확대】 교육감은 ‘자녀학비보조수당’이 대학생 자녀까지 확대될 수 있게 건의한다.

제3조【필수실무요원 수당 인상】 교육감은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대우공무원수당에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인상하도록 건의한다.

제4【가족수당 현실화】 교육감은 부양가족 수당이 인상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.

제5조【장애인보조수당 신설】 교육감은 공무원 본인과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, 장애인 1인당 월 50,000원의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.

제6조【민원업무수당】 교육감은 각급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민원업무 수당이 지급되도록 건의한다.

제7조【소방안전관리자수당】 교육감은 각급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.

제8조【호봉상한제 폐지】 교육감은 일반직 공무원의 불합리한 호봉상한제가 폐지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한다.

제9조【성과상여금 지급개선】 ① 교육감은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 공무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② 교육감은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 근무일수 제외기간에 출산휴가 기간이 포함되지 않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한다.

제10조【초·중등교육법 개정】 ① 교육감은 초·중등교육법 제31조2항 ‘국·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·학부모대표 및 지

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' 를 '국·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대표·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.'로 개정 되도록 건의한다.

②교육감은 행정실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법제화되도록 노력한다.

제11조 【도의회 서류제출】 ①교육감은 도의원이 서류제출 요구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규정된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도의회에 요구한다.

②교육감은 제1항의 법적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도의원의 서류제출 요구 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재요구하도록 요청한다.

제12조 【병설유치원 전담인력 확충】 교육감은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병설유치원 업무를 겸임하지 않도록 전담인력 확충을 위해 상부기관에 건의한다.

부 칙

제1조(유효 기간) ①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.

②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.

제2조(이행방법) 교육감은 단체협약 미이행 기관에 대하여 조합에서 이행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확인·지도하고,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계속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지도 한다.

제3조(협약의 보관) 본 단체협약을 증거 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며 교육감과 조합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행정관청에 1부를 신고한다.

제4조(관계법령의 준용)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0000년 월 일

경상북도교육감

경상북도교육청
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